

근로소득 중대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신청서

(앞쪽)

① 신청인	① 상호 또는 법인명	② 사업자등록번호
	③ 대표자 성명	④ 생년월일
	⑤ 주소 또는 본점소재지	
	(전화번호 :)	

② 과세연도	년 월 일부터	년 월 일까지
--------	---------	---------

③ 세액공제액 계산내용

가. 세제지원 요건 : ㉗ > ㉑ 또는 ㉔ > ㉕ 이고, ㉘ ≥ ㉙이어야 함

1. 상시근로자 수 계산

상시근로자 수(=㉖/㉗)		㉖ 과세연도 매월 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의 합	㉗ 과세연도 개월 수
㉘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			
㉙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			
㉚ 직전 2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			
㉛ 직전 3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			
㉜ 직전 4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			

2. 평균임금 계산(일반적인 경우: ㉝이 양수이면서 ㉞의 30% 이상인 경우)

평균임금(=㉟/㊱)		㉟ 상시근로자 임금의 합계	㊱ 상시근로자 수(=㉘~㉜)
㊲ 해당 과세연도 평균임금			
㊳ 직전 과세연도 평균임금			
㊴ 직전 2년 과세연도 평균임금			
㊵ 직전 3년 과세연도 평균임금			
㊶ 직전 4년 과세연도 평균임금			

3. 각 과세연도별 입사자 제외시 평균임금 계산(일반적인 경우: ㉝이 양수이면서 ㉞의 30% 이상인 경우)

평균임금(=㊲/㊳)		㊲ 상시근로자 임금의 합계	㊳ 상시근로자 수
㊴ 해당 과세연도 평균임금			
㊵ 직전 과세연도 평균임금			
㊶ 직전 2년 과세연도 평균임금			
㊷ 직전 3년 과세연도 평균임금			
㊸ 직전 4년 과세연도 평균임금			

4. 평균임금 증가율(일반적인 경우: ㉝이 양수이면서 ㉞의 30% 이상인 경우)

㊹ 해당 과세연도 평균임금 증가율[=(㊲-㊳)/㊳]	
㊺ 직전 과세연도 평균임금 증가율[=(㊳-㊴)/㊴]	
㊻ 직전 2년 과세연도 평균임금 증가율[=(㊴-㊵)/㊵]	
㊼ 직전 3년 과세연도 평균임금 증가율[=(㊵-㊶)/㊶]	

5. 직전 3년 평균임금 증가율의 평균(일반적인 경우: ㉝이 양수이면서 ㉞의 30% 이상인 경우)[㊽=(㊹+㊺+㊻)/3]

㊽ 직전 3년 평균임금 증가율의 평균	
----------------------	--

6. 직전 3년 평균 초과 임금증가분[㊾={㊲-㊳}×(1+㊽)]

㊾ 직전 3년 평균 초과 임금증가분	
---------------------	--

7. ㉝이 음수이거나, ㉝이 양수이지만 ㉞의 30% 미만인 경우 ㉟, ㊲, ㊳, ㊴의 계산 특례

㊿ 해당 과세연도 평균임금[=(㊲+㊳)/2]	
㋀ 해당 과세연도 평균임금 증가율[=(㊿-㊴)/㊴]	
㋁ 직전 3년 평균임금 증가율의 평균[=(㊹+㊺)/2]	
㋂ 직전 3년 평균 초과 임금증가분[=(㊿-㊴)×(1+㋁)]	

나. 세제지원 요건 : 중소기업의 경우 ㉗ > 3.2%이며, ㉘ ≥ ㉙ 이고, ㉚ ≥ 0 인 경우에 적용됨

㋃ 중소기업 계산특례[=(㊲-㊳)×(1+3.2%)×㉙]	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

㋄ 세액공제액[(㊽ 또는 ㋂) × 세액공제율(중소기업은 20%, 중견기업은 10%)], ㋃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㋃ × 20%	
---	--

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제26조의4제17항에 따라 위와 같이 근로소득 중대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합니다.

신청인
년 월 일
(서명 또는 인)

세무서장 귀하

작성 방법

- ⑧란부터 ⑫란까지의 "상시근로자 수"를 계산할 때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하고, 100분의 1 미만 부분은 없는 것으로 합니다.
 - 가. 「법인세법 시행령」 제4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
 - 나. 「소득세법」 제2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근로소득의 금액이 7천만원 이상인 근로자
 - 다.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(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) 및 그와 「국세기본법 시행령」 제1조의2 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인 근로자
 - 라. 「소득세법 시행령」 제196조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근로자
 - 마.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(다만, 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인하여 그 근로계약의 총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제외합니다)
 - 바. 「근로기준법」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
- ⑬란 및 ⑳란의 "상시근로자 임금의 합계"를 계산할 때, 임금은 「소득세법」 제2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을 말합니다.
- ⑮란부터 ⑲란까지, ㉒란부터 ㉖란까지 및 ㉓란의 "평균임금"을 계산할 때, 1천원 이하 부분은 없는 것으로 합니다.
- ㉗란부터 ㉙란까지 및 ㉔란의 "평균임금 증가율"을 계산할 때, 1만분의 1 미만 부분은 없는 것으로 합니다.
- ㉑란 및 ㉕란의 "직전 3년 평균임금 증가율의 평균"을 계산할 때, 1만분의 1 미만 부분은 없는 것으로 하고, ㉒란 또는 ㉖란의 값이 음수(陰數)인 경우에는 영으로 보아 계산합니다.
- 해당 과세연도의 근로제공기간이 1년 미만인 상시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근로소득 금액 또는 임금을 해당 과세연도 근무제공 월수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해당 근로자의 근로소득 금액 또는 임금으로 봅니다.
-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과세연도의 종료일 전 5년 이내의 기간 중에 퇴사하거나 새로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는 상시근로자 수 및 평균임금을 계산할 때 해당 근로자를 제외하고 계산하며,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과세연도의 종료일 전 5년 이내의 기간 중에 입사한 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가 입사한 과세연도의 평균임금 증가율을 계산할 때 해당 근로자를 제외하고 계산합니다.
- 합병, 분할, 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 등으로 인하여 종전의 사업부문에서 종사하던 상시근로자를 합병법인, 분할신설법인, 피출자법인 등이 승계하는 경우에는 해당 상시근로자는 종전부터 합병법인, 분할신설법인, 피출자법인 등에 근무한 것으로 봅니다.
- 창업 및 휴업 등의 사유로 ㉑란 또는 ㉕란의 "직전 3년 평균임금 증가율의 평균"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.